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가족정책과).
- 제안일 : 2025. 5. 23.
- 회부일 : 2025. 5. 26. (의안번호 : 25-58)

2. 제안이유

- 관내 여성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가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포 여성동행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마포 여성동행센터 관리·운영 위탁 근거를 명확화함으로써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행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6조제1항)
- 나. 센터 관리·운영 위탁 근거의 명확화(안 제49조제3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 정책관련 기관 등)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4. 17.~ 5. 7.(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내 여성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가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포 여성동행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마포 여성동행센터 관리·운영 위탁 근거를 명확화함으로써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6조제1항 중 “조례”를 “조례·규칙”으로 하고
 - 안 제49조제3항에서는 수탁운영자를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안 제36조와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상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9조와 관련하여 마포 여성동행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 위탁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사업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위원회로, 보다 원활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36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대상 법령이 2018. 3. 27 개정되었으나 조례의 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의 목적은 전문성과 효율성에 있지만 공정성 담보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한 심사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가족정책과	송희옥 (8910)	김지영 (89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김민경 (☎ 3153-8923)

참고자료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 제45조(양성평등정책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관련 기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울시 자치구 여성센터 설치 현황

연번	구명	해당조례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1	마포	양성평등기본조례	3년(1회연장)	양성평등위원회
2	종로	여성아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5년(1회연장)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3	성북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3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4	서초	양성평등기본조례	3년(1회연장)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5	강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1회연장)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6	중랑	양성평등기본조례	3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7	도봉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년	양성평등위원회
8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3년	양성평등위원회
9	송파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년	양성평등위원회
10	서대문	성평등 기본조례	직영	-
11	동대문	여성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직영	-

3.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 현황

인원	설치목적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8명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양성평등 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2년 (1회연임)	부구청장 (복지동행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